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70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김현정 · 김문수 · 박정현
이수진 · 이훈기 · 황명선
민병덕 · 박홍배 · 김남근
진성준 · 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의 표명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공개매수 상황에서 발행인 이사의 「상법」에 따른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도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8조 및 제161조제1항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 중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를 “그 공개매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명한 의견의 내용”으로 한다.

1. 공개매수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
 2. 의견표명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
 3. 발행인의 이사와 공개매수자 사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 ② 발행인은 의견표명 이후에 그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1조제1항제10호 중 “법인의 경영·재산 등”을 “법인의 경영·재산 및 주주의 이익 등”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제13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u>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발행인은 <u>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u></p>	<p>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 ----- -----<u>그 공개매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u></p> <p>1. <u>공개매수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u></p> <p>2. <u>의견표명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u></p> <p>3. <u>발행인의 이사와 공개매수자 사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u></p> <p>② <u>발행인은 의견표명 이후에 그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명한 의견의 내용</u>----- -----</p>

<p>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8. (생략)</p> <p><u><신설></u></p> <p>39. ~ 49. (생략)</p> <p>② ~ ④ (생략)</p>	<p>-----</p> <p>-----.</p> <p>1. ~ 38. (현행과 같음)</p> <p><u>38의2. 제13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지 아니한 자</u></p> <p>39. ~ 4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